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려운 경우 조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제2항)
 나. 수출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618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8)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소 방 청 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2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소 방 청 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